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정 1985. 7.30.

개정 1987. 4.13.

개정 1991. 4.30.

개정 1995. 12. 26.

제명개정 1998. 2. 4.

개정 2001. 9. 3.

개정 2005. 11. 18.

전부개정 2008. 10. 13.

개정 2010. 8.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6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재해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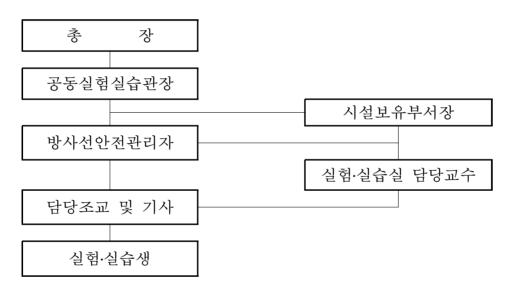
1.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핵종별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2.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최대 사용전압이 50kV 이상이면서 사람이 접근 가능한 장비의 표면에서의 방사선량율이 0.1mR/hr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용으로서 인체의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됨.
- 3. "방사선이용시설"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저장·보관·사용 등의 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4.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저장·보관·사용 및 기타 관리 또는 방사선에 피폭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종사자"라 한다)를 말한다.
- 5. "수시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일시적 출입자 제외)로서 종사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 6. "기타출입자"라 함은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이외의 자로서 방사선관리 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 7.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 방사선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 8.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 방사선량은 제외한다.
- 9.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 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원자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다.

- 10. "표면방사선량율"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사선이용시설과 종사자, 수시출입자, 기타출입자 그리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방사선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제4조(조직)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제5조 (직무)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공동실험실습관장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과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며, 이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동실험실습관장

총장을 보좌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3. 방사선안전관리자
- 가. 총장 및 공동실험실습관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나.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 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구입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 라. 원자력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이 규정의 제29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 4. 시설보유부서장, 실험·실습실 담당교수
- 가.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 나. 시설의 활용관리 및 방사선 관련 제반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5. 담당조교 및 기사
-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련 부서장 등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저장·보관·사용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련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6. 실험·실습생

방사선이용시설 내에서 실험·실습을 시행할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실험·실습실 담당교수, 담당조교 등의 주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장 취급기준

- 제6조(구매 등)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양도·양수포함)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취급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허가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 2.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 또는 침투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3.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한다.
 - 나. 사용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한다.
 - 다.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 4. 사용시설에는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
 - 5.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6.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교육

과학기술부령 1호)에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다.

- 제8조(저장·보관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는 허가를 득한 저장·보관시설 내에 보관하고, 저장·보관시설의 출입문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장치나 기타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한다.
 - ②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도난이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보안 등의 조치를 한다.
 - ③ 저장·보관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1호)에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다.
- 제9조(폐기 기준) 방사선발생장치를 폐기 하고자 할 때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폐기하며, 폐기 후 증빙사진 등을 포함한 기록(폐기사유, 폐기장비 내역, 폐기방법 및 절차)과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신고하다.

제4장 방사선량율·피폭방사선량율의 측정 및 결과의 보존 제10조(측정) ① 방사선량의 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ㆍ저장시설 : 매 방사선 작업 시
- 2. 방사선관리구역 : 매 방사선 작업 시 또는 매월
- ②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사자 : 매월(필름뱃지) 또는 분기단위(열형광선량계)로 측정
- 2. 수시출입자 또는 기타출입자 중에서 선량한도를 초과피폭 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 시 마다

제11조(기록 및 보존) 제10조제1항의 기록은 10년간 보존하고, 제10조제2항의 기록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의 피폭방사선량과 함께 사업폐지시 까지 보존한다.

제5장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
제12조(보관 및 관리) ① 방사선안전관리 장비는 방사선관리구역의 저장· 보관시설 내에 보관한다.

- ② 방사선 계측기기는 습도 및 온도 등이 적당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 등의 측정시 오차범위를 최소화 한다.
-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에 사용되는 안전관리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작업 전·후 또는 주기적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장비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 제13조(교정) ① 방사선 계측기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국립기술 품질원장이 정하는 기간마다 검교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검교정을 받은 후 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장비의 검교정 유무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개인선량계 관리 제14조(피폭방사선량의 평가) ① 필름뱃지 또는 열형광선량계(이하 "개인 선량계"라 한다)의 판독은 외부 전문 판독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판독된 개인피폭선량은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판독결과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측정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피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사자에 대하여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과 피폭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 2. 발생된 방사선장해의 상황
-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 ③ 판독특이자에 대한 후속조치와 평가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판독특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개인선량계의 착용기간 동안의 선량판독 결과가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
 - 나. 착용한 개인선량계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자.
 - 다. 개인선량계 교체기간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용한 개인선량계의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 2.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 가.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50호)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총장은 판독특이자의 피폭선량이 정부의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연간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하여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개인선량계의 관리) ① 개인선량계는 종사자로 등록된 자에게만 지급한다.

- ② 지급된 개인선량계는 착용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마다 회수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판독의뢰 한다.
- ③ 개인선량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착용, 관리한다.
- 1.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2. 종사자의 가슴 부위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신체조건 및 실험조건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 3. 납치마 등의 방호복을 입을 경우 안쪽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종사자는 실수나 취급 부주의로 개인선량계를 훼손하였을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타인의 선량계를 사용하거나 개인피폭선량측정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 선량계를 취급 할 수 없다.
- 6. 방사선관리구역에 비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출입시 착용하고, 퇴실시 반납한다.
- 7. 포켓선량계는 필요에 따라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게 지급하여 단시간 작업에 따른 피폭선량을 판독함으로써 과피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8. 포켓선량계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의 측정 시 오차범위를 최소화 한다.

제7장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교육 · 훈련

- 제16조(교육·훈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② 기존 종사자 및 신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방사선안전관리

-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76호)에 의거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원자력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시설운영관련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자, 시설보수 등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 견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은 출입하기 전 당해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장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 제17조(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기준 및 관리) ①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 1. 외부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인 곳
 - 2.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08-31호)에서 정하는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
 - 3. 물체표면의 오염도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31호)에서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 ②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종사자이외의 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따른다.
- 제18조(건강진단의 시기, 방법 및 주기)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검사

- 할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적혈구의 수 및 혈색소의 양
- 2. 심폐기능 등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 2. 종사자는 매년 실시하되,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월간의 피폭방사선 량이 "원자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년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 3. 방사선관리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 중에서 1분기의 피폭방사선량이 12.5밀리시버트를 초과한자는 초과할 때 마다
- 4. "원자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 5.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제19조(시설의 점검) ① 방사선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선관리구역은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0조에 의거 주기적으로 방사선량 등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보존한다.
 - ②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한 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장 방사선장해 등으로 인한 보건상 조치

제20조(건강진단 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 ①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1조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가 발생 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와 보고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설에서의 즉시 대피, 소화, 피난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 2.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 장소, 원인,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을 인적사항 등과 함께 지체 없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장 기록 및 비치

- 제22조(기록 및 비치) ①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1.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사용·폐기기록 등에 관한 사항
 - 2. 방사선량율의 측정에 관한 사항
 - 3.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 4. 종사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5.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6. 방사선 계측기기의 검교정에 관한 사항
- 7.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에 관한 사항
- 8. 기타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기록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 까지, 제2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11장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제23조(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방사선이용시설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작업의 승인절차 및 방법) ① 비상사태의 경우 방사선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총장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총장은 방사선 긴급작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때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긴급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31호)에 의거, 방사선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5조(보고내용 및 절차) 비상사태에 의한 응급조치 및 긴급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관 기관에도 통보한다.

- 1.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 2. 긴급작업자의 인적사항, 작업내용 및 피폭방사선량
- 3.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 4.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12장 사고예방 및 사고시의 조치

- 제26조(사고예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문 및 저장·보관시설의 시건 장치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내에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 제27조(사고시의 조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 1. 화재로 인한 위험이 우려될 때
 - 2.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을 받은 때
 - 3.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 4. 기타 원자력 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때
- 제28조(사고시 후속조치 절차 및 방법)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별표 1의 보고체계와 별도의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 책임 및 직무

- 제29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권한 및 직무수행)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총장을 보좌 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에 대한 지시 및 업무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법 제104조의4(종업원에 대한 보호)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사자 관리 : 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시, 개인피폭방사선량 관리, 건강 검진 실시 및 평가 등
 -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 : 구매, 사용, 폐기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필요한 사항의 기록 등
 - 3. 방사선이용시설 관리 : 안전성설계(차폐설계), 출입자 통제, 방사선량율 측정 및 기록 등
 - 4. 방사선 안전장비 관리 : 방사선계측기기의 검교정, 장비의 성능 점검 등
 - 5. 인ㆍ허가 관리 : 인ㆍ허가 및 각종 신고 관련 업무 등
 - 6. 기타 방사선안전과 관련된 대내·외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업무 등

제14장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

- 제30조(기타) ① 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항상 주지하고 엄수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1조(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 1. 만18세 미만인 자
 - 2. 이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3. 이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정상이 아니거나 종사하기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자
 - 4. 개인선량계를 지급 받지 못한 자
 -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부칙(제509호, 2008.10.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1호, 2010.8.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보고체계

